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25
----------	-----

2024. 3. 22.(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3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3월 14일

-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지현 의원)

가. 제안이유

-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관한 민·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정의하고 관련사업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물환경” 및 “민간단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미호강 유역 물환경 보전활동에 관한 사업 및 운영비 지원을 규정(안 제15조)

### 3. 검토보고 요지 (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안 제2조제4호는 ‘물환경’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제5호는 민간단체를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 규정하여 다양한 민간단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였는데,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선정 시 조문해석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향후 보다 명확한 기준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주민’은 미호강 유역인 5개시군(청주, 증평, 진천, 음성, 괴산)의 행정구역 내(內) 어느 범주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미호강 유역

□ 유역규모 : 유역면적 1,855km<sup>2</sup>

□ 관련 행정구역 : 4개 시도, 8개 시군구 (123개 읍면동)  
 ※ 세종시, 충청도 (청주, 증평, 진천, 음성, 괴산), 충청도(천안), 경기도(안성)

구분	유역	세종	충남	충북						경기
			천안	소계	청주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안성
면적	1,855	222	267	1,346	588	407	53	216	82	21
구성비	100	12%	14%	73%	32%	22%	3%	12%	4%	1%

- ‘단체가 자발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주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관계법령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의 범위 이상으로 폭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음.
- 안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은 유기적인 유역차원의 통합물관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사업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물관리기본법」제6조8) 에 따르면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통합물관리 정책의 유역공동체 역할 강화**

□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9)] 통합물관리 혁신정책 중 하나로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으로 △유역별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유역 내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및 소통 기반 강화 방안을 제안함.

□ [충북도 미호강 맑은물 사업 추진방향]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유기적 참여가 필요함을 명시함.

❖ 미호강 유역공동체 구성원별 통합물관리 역할분담

구분	구성원	주요역할	세부 내용
충청북도	도 관련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총괄관리	▸ 종합·시행·추진계획 수립 ▸ 정책·제도 등 이행·성과관리
5개 시·군	청주·증평·진천· 괴산·음성군	실행관리	▸ 세부사업 실행 및 업무협력 ▸ 예산·행정 지원업무
미호강유역 협의회	학계·환경단체 등	일상관리	▸ 실천사항·일상적인 세부시책 ▸ 정책제안 등 학술·기술적 지원
농·축산 및 산업	농·축산업단체 상공회의소	개선관리	▸ 오염원의 적정처리 등 책임 ▸ 친환경농업 등 운영개선
관련 기관 등	충북교육청 중앙부처	지원업무	▸ 생활실천교육 등 인재양성 ▸ 수자원·통합물관리 협력

[표 출처] 충청도 수자원관리과 미호강 맑은물 사업 내부자료 중 발췌, 2023.5.

8)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9) 지표수·지하수(빗물 포함)의 수질·수량·수해·수생태·농업용수 관리뿐만 아니라, 상하수도·하천·댐·저수지 등 물관리 인프라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의 모든 물관련 계획들의 기본이 되는 계획

####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간단체 관련사업 운영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보조금의 적법한 운영비 교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정의에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

4.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과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하여 말한다.
5. “민간단체”란 미호강 유역의 물환경 보전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위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15조의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다음 각 항으로 구분 신설한다.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 ②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과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하여 말한다.</u></p> <p>5. <u>“민간단체”란 미호강 유역의 물환경 보전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위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u></p>
<p>제15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생략)</p> <p>&lt;신 설&gt;</p>	<p>제15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충청북도 미호강의 수질·수량·수생태계 등에 대한 통합물관리를 통해 가치 있는 유역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 사항 규정

## 2. 비용 발생 요인

미호강 유역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모니터링, 일상적인 유역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오염원 정화, 감시 등 환경보전사업 및 활동 등에 따른 소요 예산 발생

## 3. 관련조문

- 안 제14조(미호강 통합물관리 사업)
- 안 제15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 미호강 통합물관리 사업 :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오염원 정화, 감시, 교육, 홍보 환경보전 사업 및 하천관리활동
-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 민간단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예산 지원

나. 추계 결과: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1,000,000천원 소요

- 年 200,000천원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미호강 유역 하천관리활동 전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 도비 100% (年 200,000천원)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 <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안 제15조) 미호강 통합물관리 사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유역환경 개선을 위 한 주민하천관리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도 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